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중대범죄를 범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에 관한 세부 집행방법 및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찰사건사무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이 이동한 것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통지서(별지 제6호)의 불허가 사유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내용을 추가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대검찰청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7. 2. ~ 8. 12.) 예정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4가목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9조제1항제1호”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9조제1항제9호”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9조제1항제66호”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6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9조제1항제67호”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7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9조제1항제70호”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0호”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9조제1항제72호”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2호”로 한다.

제14조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9조제1항제63호”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3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지 방 검 찰 청

우/ - 주소 /전화 - - /전송 - -

수신자 귀하 (우, 주소)

제 목 사건기록 []열람 불허가 통지
[]등사

귀하가 신청한 우리 청 형(진정·내사·수사·시정)제 호 사건기록 열람·등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6항,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부, 일부) 불허함을 통지합니다.

불 허 부 분*	불 허 이 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제5호)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7호)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6호)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8호)

※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9호) 별지사용 가능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재결청(○○고등검찰청검사장)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 . . . ○ ○ ○ 지 방 검 찰 청

검사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결정·처리 생성 문서” 란 검사가 작성한 다음 각 목 의 문서를 말한다.	1의4. ----- -----.
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u>319조제1항제1호</u> 의 불송치 -수사중지기록접수서	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u>321조제1항제1호</u> ----- -----
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u>319조제1항제9호</u> 의 수사경 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 서	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u>321조제1항제9호</u> ----- ----- -
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u>319조제1항제66호</u> 의 보완 수사요구 결정서	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u>321조제1항제66호</u> ----- -----
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u>319조제1항제67호</u> 의 불송 치기록 검토결과서	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u>321조제1항제67호</u> ----- -----
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u>319조제1항제70호</u> 의 재수 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	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u>321조제1항제70호</u> ----- -----
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u>319조제1항제72호</u> 의 수사	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u>321조제1항제72호</u> -----

중지기록 검토결과서 사. (생 략) 2. ~ 8. (생 략) 제14조(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송치결정서(「<u>검찰 사건사무규칙</u>」 제319조제1항 <u>제63호</u>의 사건이송·이첩결정서 및 같은 항 제64호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 등을 포함한다)는 사건수리통지서와 합철한 후,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하여 보존한다.	----- 사. (현행과 같음) 2. ~ 8. (현행과 같음) 제14조(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u>검찰 사건사무규칙</u>」 제321조제1항 <u>제63호</u>----- ----- ----- ----- ----- ----- -----.
--	--